

#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6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

#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정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: 2026. . . .

발 의 자: 김정도 의원(1인)

찬 성 자: 김근한·김민성·이상호·이지연  
장미경·허민근 의원(6인)

## 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단순 행사성 체육대회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 참여 기반의 문화·체육활동, 화합 행사,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조직 내 소통과 결속을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소속 공무원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 근거 신설(안 제8조제11호)
- 나. 소속 공무원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·지원 근거 신설(안 제8조제12호)

## 3. 조례안: 붙임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
- 나. 부서검토: 총무과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##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, 제7호 및 제8호 중 “직원”을 각각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3호(중전의 제12호)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11.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
12. 소속 공무원의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 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<u>직원 휴양 시설(콘도 및 휴양 소) 이용료 지원</u></p> <p>5.·6. (생 략)</p> <p>7. 미취학 자녀를 둔 <u>직원</u>에 대 한 보육료 지원</p> <p>8. 임신 축하 편의 용품 등 <u>직원</u> 임신·출산 장려 지원</p> <p>9. (생 략)</p> <p>10. 우수·모범·적극행정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<u>공무원</u>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및 소그룹 탐방 지원(자부담 해외연수 포함)</p> <p>11. <u>소속 공무원의 체육대회 지 원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8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소속 공무원</u> ----- -----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<u>소속 공무 원</u>-----</p> <p>8. ----- <u>소속 공무원</u> --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----- <u>소속 공무 원</u>----- -----</p> <p>11. <u>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 는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 행사</u></p> <p>12. <u>소속 공무원의 가족 친화 프 로그램 운영 및 지원</u></p>

12.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 
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
하는 사업

13. ----- 소속 공무원-----  
-----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- 제77조(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 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 검 토 의 건 서

부서명: 총무과

조 례 명	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근거법령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▪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, 「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」 제1조</li></ul>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주요 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기존의 일회성 행사, 집단 중심의 ‘체육대회 지원’ 규정을 자발적 참여 기반의 ‘문화·체육 활동 및 화합행사 지원’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(안 제8조제11호)</li><li>○ 소속 공무원의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‘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지원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제12호)</li><li>○ 조례 내 ‘직원’을 ‘소속 공무원’으로 일괄 정비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8조)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 결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최근 공직사회 내 세대 구성 변화, 가족 중심 문화 선호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춰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,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조례 체계에 반영하여 명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</li>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조례 개정에 따른 향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기대효과: 소속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와 조직 소속감을 높여 장기적으로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</li><li>○ 소요예산: 688,419천원(2027년 ~ 2031년 비용추계)</li><li>○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</li></ul>	

# 구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8조제11호: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행사 운영비
- 안 제8조제12호: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비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(추계대상) 구미시 소속 공무원
- (추계기간) 2027년 ~ 2031년 (5년간)
- (산출기준) 항목별 정량적 산출 및 평균 소요 단가 적용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출	문화·체육 활동 및 화합행사 운영	51,500	53,045	54,636	56,275	57,963	273,419
	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	81,000	82,000	83,000	84,000	85,000	415,000
	소계	132,500	135,045	137,636	140,275	142,963	688,419
총 비용		132,500	135,045	137,636	140,275	142,963	688,419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-	-	-	-	-	-
도비	-	-	-	-	-	-
시비	132,500	135,045	137,636	140,275	142,963	688,419
민간	-	-	-	-	-	-
기타	-	-	-	-	-	-
합계	132,500	135,045	137,636	140,275	142,963	688,419

#### 5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향후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수혜자 변동에 따라 재정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

#### 6. 작성자

- 총무과 후생복지팀 김희연(☎054-480-6793)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○ 문화·체육활동 및 화합행사 운영

#### ▪ 추계방법

- 정량적 산출(단가 x 수량)
- 매년 물가상승 및 행사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전년 대비 3% 증액분 반영

#### ▪ 산출내역

##### - 1차년도(2027년)

(행사운영비) 14,020천원 × 1일 = 14,020천원

(식비 등 부대비용) 24,880천원 × 1일 = 24,880천원

(대관료) 10,600천원 × 1일 = 10,600천원

(안전요원) 200천원 × 10명 = 2,000천원

##### - 2~5차년도(2028년~2031년): 전년도 대비 3% 증액분 반영

### ○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

#### ▪ 추계방법

- 1인당 평균 소요 단가 적용
- 자녀 양육 직원과 우수공무원 포상의 중복 지원을 허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

#### ▪ 산출내역

- 1차년도(2027년): 100천원 × 810명 = 81,000천원

- 2~5차년도(2028년~2031년): 매년 중복 수혜자 및 참여 확대에 따른  
연평균 10명 증원 반영